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70

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:김성원·박덕흠·김선교

박성훈 • 고동진 • 김태호

구자근 • 박충권 • 김정재

임이자 · 이종배 · 이인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"반환공여구역"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공여구역 반환이 지연되거나 매각·양여 등 처분의 요건인 토양 오염 정화작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평가액과 최종 처분 시점의 평가액 간 격차가 심하여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만큼 사업비가 폭증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, 급증한 매각가액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무산되거나 국방부와사업당사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

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9항). 법률 제 호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9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	제12조(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		
처분) ① ~ ⑧ (생 략)	처분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⑨ 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		
	의 매각가격은 반환일을 기준		
	으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		
	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		
	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		
	<u>액으로 산정한다.</u>		